

CFIUS, 수출 규제를 위한 신고의무 제정

2020 년 10 월 14 일

Reid Whitten, Julien Blanquart and Lisa Mays

2020 년 10 월 15 일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수출관리규정(EAR)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을 포함한 미국의 수출 통제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Mandatory filing)를 공식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의무(Mandatory filing)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CFIUS 심의를 수출 규제의 복잡한 세계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기업에 대한 특정 외국인의 인수 및 투자 건을 심의하고 완화 및 파기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 투자 건들은 심의를 위해 CFIUS 에 통보될 필요가 없지만, 일단 CFIUS 가 거래를 허용하면 향후 중재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와 타겟들은 자발적으로 CFIUS 에 통지서 및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 년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이 CFIUS 에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 항목들을 만들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투자 금액 전체에 달하는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실수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강조됨).

2020 년 10 월 15 일 이전까지 CFIUS 에 신고의무가 필요한 거래에는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로 분류된 특정 산업에서 사용될 "중대한 기술"의 개발, 생산 또는 시험과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NAICS 코드는 모든 기업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이 특정 NAICS 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중대 기술에 대한 신고의무 규칙 추가

가장 최근의 최종 규칙(Final Rule)(85 FR 57124)에 따르면 NAICS 코드는 더 이상 신고의무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10 월 15 일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들은 아래 CFIUS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투자 및 인수 건에 대하여 반드시 CFIUS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타겟이 1 개 이상의 "중대한 기술"을 생산, 설계, 시험, 제조, 제작 또는 개발함
2. 위 기술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 또는 재이전 할 경우, "미국 규제 허가(US regulatory authorization)"를 필요로 함:
 - 3a. CFIUS 관할구역에서 투자 중인 당사자. 또는,
 - 3b. 개인적으로 또는 외국인 그룹의 일부로서 CFIUS 관할구역에서 투자 중인 당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모든 사람.

"미국 규제 허가(US regulatory authorizations)"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방위 물품 또는 방위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기타 승인
2.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통제되는 품목에 필요한 라이선스
3. 미국 에너지부의 규정 (Department of Energy Regulations)에 따른 특정 관리 대상 핵기술의 수출에 필요한 특정 또는 일반적인 승인. 또는,
4.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라이선스.

따라서 CFIUS 신고서 및 통지서가 의무인지 여부는 거래의 해외 당사자에게 타겟의 기술을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 또는 재이전 하는데 미국의 규제 허가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

EAR 라이선스 요건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여, 상업용 항공기 부품부터 휴대폰, 석유 및 가스 탐사 장비에 이르는 모든 관련 기술이 수출을 위해 규제되며 라이선스 취득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 규칙(Final Rule)에는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1] 개정된 CFIUS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예외 조건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미국 기업이 수출 전에 필요한 EAR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실제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기술 및 소프트웨어 – 제한 없음(TSU) (15 CFR 740.13);
2. 암호화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ENC) (15 CFR 740.17(b)); 또는
3. 전략적 무역 승인(STA: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 (15 CFR 740.20(c)(1)).

각 예외조항들은 책자의[2] 자체 챕터가 필요할 만큼 길기 때문에 핵심만 말하자면, NATO 회원국들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및 한국("NATO plus" 국가들)이 투자하는 많은 기술(암호화 기술 포함)들이 신고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마무리

새로운 규칙에 따라 시기, 적격성 및 예외 투자자 조항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대 기술이 포함된 신고의무 시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기술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중 하나의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래종료일
- 양 당사자가 거래의 중요한 조건을 확립하는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을 실행함.
- 한 당사자가 주주들에게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공모함. 또는,
- 주주가 미국 기업의 이사회 선출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요청하거나, 불확정 지분권(contingent equity interest)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해당 불확정 지분권의 전환을 요청함.

EAR 라이선스 예외 자격에 대한 "적격성". EAR 라이선스 예외 자격에 대한 "적격성"의 명확한 설명 요청에 따라, 최종 규칙(final rule)은 각 EAR 라이선스 예외 조항의 적격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에 대한 면제는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출 전에 EAR 이
부과한 필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외적인 투자자 면제. 다양한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면제 국가"(작성일 기준 당시, 호주,
캐나다, 영국)의 투자자는 규정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CFIUS 의무 심사에서 면제됩니다.

시사점

수출 통제 시스템은 국가, 기술 및 경제 보안 우선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CFIUS
신고의무를 수출 통제 기관에 규정함으로써, 동맹국으로부터의 라이선스는 적게, 경쟁국이나
적대국으로부터의 라이선스는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내용은 NATO
Plus 국가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CFIUS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 기업에 대한 모든 예비 투자자들이 CFIUS 심의와 관련하여
수출 법규 컴플라이언스 자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

[1] 여기서부터 앞서 언급했던 수출 통제에 관한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결론만 확인해도 무방하지만, 세부 사항들은 수출 법규 컴플라이언스 자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 쉐퍼드멀린이 암호화에 관해 작성한 WorldECR 간행물.